

『인권연구』 8(1): 131-16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8(1): 131-161.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5.8.1.131>

[일반논문]

## 인권 감수성의 이해와 적용

: 대학 인권 교과 참여 사례를 통해

김현정\*

---

한글초록

본 논문은 인권 감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적용 및 실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 교양 교과로 개설된 인권 교과목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학 인권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을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측면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을 하더라도 실천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단체 자원봉사, 기부, 캠페인 동참 등을 통해 인권문제 해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대학 인권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감수성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 의지를 자각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 교과목 수업은 학생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연대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셋째, 인권 교과목의 수업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인권교육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권기반 교육방법에 대한 교수자의 고민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주제어: 인권 감수성, 인권교육, 대학 인권교육, 인권 교과목, 대학 교양 수업

---

\*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연구교수

ISSN 2635-4632

목 차

- I. 서론
- II. 인권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 III. 인권 감수성 교육: 대학 인권 교과 참여사례
- IV. 결론

## I. 서론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된다(김용신, 2025: 219; 김자영, 2012: 8; 허완중, 2023: 292-293).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은 인권 그 자체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인 것이다(이성훈, 2010: 218).

유엔 인권교육 훈련에 관한 선언 제2조는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및 준수를 촉진하여 그에 따라 특히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 문화 형성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공해 인권적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킴으로써 특히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인식 제고, 학습 활동”을 인권교육 및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2011).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1)</sup>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기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의 실시를 협의하고, 연구를 요청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인권교육이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다(나달숙, 2015: 46).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 인권 존중과 실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고 전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10가지 범교과 학습 주제<sup>2)</sup> 가운데 하나로 인권교육을 설정하였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서 인권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교육부, 2022: 17).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여전히 독립된 인권교과가 아닌 교과서 내에서 일부 단원에 제시하거나 단원의 일부로서 인권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과 같은 유사 인접 교육 활동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이쌍철, 2019: 260), 인권 내용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형식적 교육이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 범교과 학습주제란 국가·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학습내용이자 여러 교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주제를 말한다. 인권교육 외의 범교과 학습주제로는 안전·건강 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환경교육 등이 있다(이보라, 2023: 7).

다(김위정·김종우·이가람, 2021: 36; 나달숙, 2015: 45; 이쌍철, 2019: 96).

이러한 인권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체계 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에 대해 학습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권교육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처하는 사회적 조건은 변화하므로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과 실천은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엔은 제2차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교육체계 인권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유성상·박병진·김영중, 2015: 4).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전공과 교양 교과목의 정규 교과과정 및 비교과 활동<sup>3)</sup>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관련 지식과 이해의 제공뿐만 아니라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와 태도를 발전시키고,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사회활동 참여의 고취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인권 감수성 향상은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이자 목표가 되어 왔다. 인권 감수성이 인권옹호 행동을 유발하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인권 감수성 향상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류미영, 2017: 151; 변길희, 2023: 185; Hee-Jin Lee·Won-June Lee, 2024: 72-73).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대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인권 감수성을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어떻게

---

3) 대학의 인권교육은 교과 과정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공 및 교양 교과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거나, 동아리나 사회봉사 활동, 교내 프로그램 등 비교과 과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 교과과정을 통한 인권교육은 교과목의 목표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이 설계되어 이를 일정한 기간 안에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론과 이슈 등을 심화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교과 과정은 영화제, 인권워크숍, 인권기관탐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교양 교과로 개설된 인권 교과목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방향을 점검하고, 인권 감수성 함양이라는 대학 인권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인권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 1. 인권교육과 인권 감수성

감수성은 인지적 능력에 기반을 두고 발현되는 정서적 측면의 태도, 성향 등을 가리키며 감수성을 이해하는 시각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능력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박형빈, 2021: 43). 연구자들은 감수성에 대한 연구로 정서적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인권 감수성,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생명 감수성 등 다차원의 영역을 다룬다(조윤희, 2023: 23).

문용린은 인권 감수성을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2002: 11).

이후 인권 감수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구자마다 인권 감수성의 정의 및 특성에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인권 감수성을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있다. 자유, 평등, 존엄, 다양성 및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태도와 능력(노을이·안채리·박수정, 2018: 134)을 인권 감수성의 인지적, 정서적 특징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상황에서 그 해결을 위한 행동과 실천을 포함하는 것이다(구정우·남윤창·황태희, 2018: 58; 홍순혜·윌미순·박미현·문정희, 2014: 58). 이는 인권 감수성이 인

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와 실천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인권교육의 목표가 인권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상황에 놓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를 고취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정진성, 2014: 22; 유성상·박병진·김영중, 2015: 16), 인권 감수성의 증진은 인권교육의 내용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 인권 감수성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김경숙, 2023: 김선필·염미경, 2013; 심태은·이송이, 2018: 353).

## 2. 대학 교양교육과 인권 감수성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대학의 역할이 직업훈련 기관으로 축소되고, 전인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의 역할과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정재원·이은아, 2018: 14).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교양교육의 가치를 인문학(역사, 예술, 문학, 철학 등)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서적, 실천적 체험을 통한 자유 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다(최령·강지혜, 2024: 346). 전인격의 형성이라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과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간의 인성, 인격과 관련한 인문학적 가치에 입각한 대학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민용기, 2024: 267).

대학에서 교양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사회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하도록 한다. 이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자율적 인간이자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55).<sup>4)</sup> 자신과 다른 의견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의 중요한 자질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인권의식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고 역량<sup>5)</sup>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과제이자 의무이다. UN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2차 행동계획은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았고, 특히 고등교육의 인권교육은 인권의 쟁점이 직면할 수 있는 전지구적 지식을 생성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전윤경, 2020: 82).

대학에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인권교육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권 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인권교육 강화'(33.9%)를 꼽았다.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sup>6)</sup> 고려한다면, 대학이 인권 교과목 개설을 통해 인권교육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의 인권 교과목 개설에 대해 교수들은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4)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와 관련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95.0%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 지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79.4%,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75.4%로 나타났다.

5) 사회의 구성원과 사물들에 대해 올바른 도덕을 함양하는 역량, 자기 보전을 위한 적절한 욕망과 그 충족 수단을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게 되는 역량을 의미한다(민웅기, 2023: 95).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제도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시민역량이다.

6) 인권교육 경험을 학력별로 조사한 결과, 고졸이하 4.4, 대재이상 17.8%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176).

권리이고 존중받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 더 많은 인권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고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대학의 인권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sup>7)</sup>

각 대학은 다양한 교과목명으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하였는데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실천을 도모한다.”, “노동인권의 소중함을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식 및 지식과 실천의지를 지닌 지성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권운동 실태조사 및 인권현장 체험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여가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인권침해 발생의 사회적 원인 분석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를 검토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한다.” 등으로 인권 감수성 증진을 학습 목표로 제시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정진성, 2014)<sup>8)</sup>. 대학은 인권 교과목 개설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방법을 익히며, 인권향상을 위한 실천 의지와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인권에 대한 지식을 새롭거나 유사한 상황과 맥락에 전이하여,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인권옹호 행위를 실천할 수 있

---

7)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조사’에 응답한 307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 중 57%인 174개 대학이 인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의 개설 비율이 75%, 사립대학의 비율이 53%이다. 개설교과목 수는 총 1,083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국공립대학이 339개, 사립대학이 744개 인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다(정진성, 2014: 34).

8)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2014년 대학교의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조사에서는 인권일반, 인권과 법, 인권과 사회, 국제인권, 사회적 약자와 인권, 기타 등 총6개 분야의 87개 인권 교과목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고, 2014년 조사에서는 인권일반/사회,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소수자, 평화/전쟁/정치, 법/범죄 분야의 50개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도록 해야 한다.

### III. 인권 감수성 교육 : 대학 인권 교과 참여 사례

#### 1. 교과목 내용 및 교수법

본 연구는 대학 교양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인권 교과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이해와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인권 감수성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인권옹호 및 실천을 도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인권 교과목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교양 선택과정으로 개설한 3학점 과목이다. 2024년 2학기과 2025년 1학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총 44명이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1학년 24명, 2학년 9명, 3학년 2명, 4학년 9명이다. 인문대, 공대, 사범대, 경영대, 정경대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본 교과목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주요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탐구와 통찰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탐색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교과목의 수업내용을 (1) 인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다양성, 젠더, 이주노동자, 장애와 차별, 국가폭력, 범죄피해자 등 국내외 주요 인권문제의 쟁점 및 원인 분석, (3) 인권친화적 공동체 형성 등 인권문제 개선과 해결방안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심리학, 사회학 등의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 및 그 해결을 법률적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였다.<sup>9)</sup>

9) 법 교육 중심의 인권교육이 갖는 기능 위주의 인권교육의 한계는 인권

학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수업의 내용과 목표, 방식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수업의 기본 규칙을 설명하였다. 기본 규칙으로 (1) 학생들의 질문과 발표 시 경청한다, (2) 질문이나 의견을 말하는 학생에 대해 인격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3) 학생 개인의 경험을 수업 외 공간에서 부적절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기 중에 기본 규칙을 반복해서 안내하였다. 이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업이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학생들이 수동적인 위치를 벗어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읽기자료를 제공하고 수업시간에 함께 토론·토의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토론과 토의를 촉진하기 위해 학습 내용에 맞는 워크시트를 제공하였다.<sup>10)</sup> 학생들은 조별토론과 토의를 통해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였다.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수업내용이자 수업자료가 된다. 이러한 공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확장하고 인권실천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다.

본 연구가 주요하게 분석한 자료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이다. 본

---

적 문화형성을 강조하는 접근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21).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본 교과목을 구성하였다.

- 10)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수업 주제 및 내용에 맞는 워크시트(work sheet)를 만들었고, 토론·토의 시 활용하도록 학생들에게 워크시트를 제공하였다. 일례로, ‘헌법과 인권’ 수업 시 학생들에게 (1) 대한민국헌법을 읽은 소감, (2) 대한민국헌법 조항 중 인권 관련하여 자신에게 가장 의미있는 조항과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조별로 워크시트를 나누어 주고 토론·토의를 거쳐 그 내용을 작성한 후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 발표 시 학생들에게 토론·토의 시 주요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토론·토의를 통해 갖게 된 생각과 느낌 등을 발표하도록 하였고,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수업 후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권 감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인권 감수성이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하는지, 자신의 인권 감수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이유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에서 조별 토론과 토의 시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 수업에서 학생들이 익명으로 제출한 의견<sup>11)</sup>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 2. 인권 감수성 이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정의하는 인권 감수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의 개념적 요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둘째 인권문제 및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셋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이다.

### 1)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의 첫 번째 요소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학생들은 “인권 및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인권을 이해해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다.”,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일상에서 인권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가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권문제로 인식해야 공감이나 문제 해결 과정이 가능하다.” 등의 이유로 인권 감수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 인권문

---

11) 학생들의 수업 참여 활성화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익명으로 참여 가능한 온라인 도구인 슬라이도, 패들릿을 사용하였다.

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번 수업에서 인권의 이론적 기반과 실제 사회적 적용 사례를 학습하며 인권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 A, 2학년)

수업 전날에 읽었던 학습 자료를 읽는 것이 인권 감수성을 형성하는 데 기초 토대를 마련해 준 것 같다. 학습 자료에서 인권의 개념,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 역사적 발달, 구조적 접근 등을 배우고, 다양한 영역의 편견, 혐오,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평화, 국가 권력과 인권침해, 다문화 사회, 일할 권리, 젠더, 장애와 차별, 범죄와 피해자, 시민사회와 NGO와 같은 다양한 사회 영역을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학생 B, 1학년)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인권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야기되거나 유지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인권 감수성의 시작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인식’의 힘을 배운다.

혐오는 그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 다름을 인지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발생하는 혐오를 조심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학생 C, 4학년)

다른 학생들이 조사해 온 부분이나 이전에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평소에 나 혼자 생각을 했다면 떠올리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들이나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 (학생 B, 1학년)

## 2)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

학생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 즉 인권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인권 감수성의 구성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 감수성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공감할 수 없다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어렵다.”,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해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다.”, “공감은 인간성이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인간성이 인권 감수성이다.”, “문제의 해결은 공감에서 시작한다. 단순히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사회를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인권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 ‘공감’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인권 감수성은 헌법 및 여러 법 조문에 있는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인권 관련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며 충분히 그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인권 감수성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태도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고, 자신과 멀리 떨어진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깊이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학생 D, 2학년)

초등학교 때 아프리카 빈민 아이들을 보고 강한 연민을 느꼈다.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는 개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다. 특히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같은 영상 미디어는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상과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디어들은 내가 단순히 관찰자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일부가 되어야 한

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학생 E, 1학년)

공감은 ‘입장전환의 사고(positional thinking)’, 즉 다른 생명체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며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과 연결된다(누스바움, 2011: 77). 인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인권침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더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이 없다면 무의미할 수 있다. 인권옹호 행동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갖게 되는 온정, 연민, 자비, 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감이 높을수록 인권침해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를 지양하고 고통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요청한다(김화경, 2014: 334).

### 3)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공감은 타자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감정에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이현재, 2016: 54).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이 단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권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부 세계의 문을 닫고 삶이 평온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주변인들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요구할 때, 나는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끄러움은 인권 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현재 상황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인권침해를 옹호하거나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이들과 같은 범주에 있게 되면 느끼는 부끄러움과 높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부끄러워한다. (학생 F, 1학년)

인권은 추상적 개념만이 아니며 인권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인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익명의견)

‘행동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학생의 성찰은 실천이 인권 감수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대학의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을 때 이 상황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 3. 인권 감수성의 적용

#### 1) 인권침해 판단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실천 과정에서 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가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이해한 인권 감수성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며, 그 사례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1>은 학생들이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를 시민·정치적 권리<sup>12)</sup>와 사회·문화·경제적 권리<sup>13)</sup>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 항목에 맞게 인권침해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sup>14)</sup>

12)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란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방해·비난·차별,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법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말한다.

13) 사회·문화·경제적 권리 침해에는 안전의 위협,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일터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소음, 악취, 빛 공해, 일조량, 대기 등), 편의시설 부족 또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 못함, 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나 모욕적 대우 등이 해당한다.

<표 1>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 인식

항목	세부 항목	인권침해사례(명)
시민·정치적 권리	신체의 자유	-5.18 및 2024.12.3 계엄(4)
	집회·결사의 자유	-남태령 시위 진압(1)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2)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성소수자 차별(2) -이주노동자 임금차별(1)
사회·문화·경제적 권리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장애인 이동 지원(4)
	노동권	-임신과 출산으로 퇴사 강요(1) -외국인 노동자 폭행, 성희롱·강제추행, 불법감금, 근로기준법 위반(4)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준수(1)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2) -배달노동자의 과도한 노동(1) -직장 내 괴롭힘(1)
	안전권	-장애인 학대, 폭행(1) -성범죄 및 2차 피해(2) -아동학대(1) -학생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4) -군대 내 폭력(1) -세월호 참사(1) -부실공사로 인한 상해 및 사망(1)
	문화권	-노령층, 저소득층의 기술발달 혜택으로부터 소외(1)

학생들은 시민·정치적 권리 중 4개 항목에 6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였고, 사회·문화·경제적 권리에서는 4개 항목의 15개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시민·정치적 권리를 살펴보면,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

14) 시민·정치적 권리 항목과 사회·문화·경제적 권리 항목의 구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익실태조사 보고서의 분류를 참조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67-87).

하게 대우받을 권리의 4개 항목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제시되었다. ‘신체의 자유’ 항목에 5.18 및 2024.12.3. 계엄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심을 알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 항목에 대해 남태령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sup>15)</sup>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 시위 시작 전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따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7월 농기계 상경 시위를 막은 경찰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점을 들었다.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항목에는 사이버상의 폭력과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 꼽혔다. 혐오표현,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 폭력은 그 전파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항목에는 성적 지향, 국적, 신분 등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성적 소수자 및 이주노동자 차별을 인권침해로 판단하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판단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위반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경제적 권리를 살펴보면, 4개 항목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제시되었다.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돌봄, 요양보호, 활동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학생들은 장애인 이동의

15) 2024년 12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전여농)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가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남태령고개 근처에서 경찰의 저지에 부딪혀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삼삼오오 남태령역 인근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벌였으며, 경찰이 시위대가 서울에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둔 차벽을 치우도록 요구하거나 K팝 음악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중 2명이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8시간 가량의 장시간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 및 전농 측과 교섭한 결과, 단 10대의 트랙터만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하기로 협의하면서 시위는 일단락되었다.

계약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학생들은 교통수단의 제약 및 편의시설 이용의 제한<sup>16)</sup>을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권’에는 성별, 국적, 고용형태 등이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안전권’은 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장애인, 여성, 군인, 아동, 학생 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로 제시한 사례가 많았다. 부실 공사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로 판단한 학생도 있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로서 ‘문화권’에는 노령층과 저소득층의 기술발달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가 인권침해 사례로 제시되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 계층에게는 디지털 등 기술발달이 오히려 일상의 장애물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정보 격차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차별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sup>17)</sup>

---

16) 편의시설 접근과 관련한 사례로는 2018년 장애인들이 정부와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접근권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들이 GS리테일의 일부 편의점에서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와 자동문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 침해로 문제 삼은 것이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관련 행정청이 대통령령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기준을 정할 입법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국가배상이 청구된 사안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이고, 국가는 제한된 재정 능력과 사회·경제적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 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17) 2023년 일반국민 대비 4대 정보취약 계층의 종합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79.0%로 2022년 대비 1.0%p 상승하였다.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사회·문화·경제적 권리 중 ‘노동권’, ‘안전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이 다른 권리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평등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노동권, 안전권에 대한 긍정응답이 주거권, 교육권 등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sup>18)</sup>

## 2) 인권문제의 해결과 실천

인권교육은 인권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한 변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관점, 사회구조적 조망을 채택해야 한다(정진성, 2014: 19). 인권을 구조와 조건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인권침해에 관한 문해능력을 키우고 이에 합당한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조효제, 2016: 119).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구조적 폭력에도 관심을 가게 되었다.  
(학생 H, 1학년)

단순한 표면적 지식 습득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적·구조적 요인임을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젠더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명확히 제지

---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의미하는데, 계층별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73.8%로 가장 낮으며, 그다음으로 농어민(79.2%), 장애인(82.5%), 저소득층(97.4%)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5).

18) 사회·문화·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를 조사한 바, 주거권 88.9%로 긍정응답(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이 가장 높았고, 노동권이 7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권이 존중된다는 비율은 88.6%, 안전권이 존중된다는 비율은 74.2%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79).

했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내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입장을 깊이 고민해 보며, 단순한 공감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학생 I, 2학년)

그러나 학생들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 대해 심리적인 장벽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천에 대한 자기 확신이나 용기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인권문제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진짜 상황에 내가 놓일 때 무조건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해결까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학생 J, 1학년)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느낀 문제의식을 행위로 직접 이행하기가 내게는 아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미성숙하며 행위까지 이어지는 데 용기가 부족하다. (학생 K, 4학년)

학생들의 실천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무기력감이다. 인권침해에 분노하고 그 현실을 개선하고자 참여하였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목격할 때 느끼는 무기력감은 학생들에게 좌절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인권침해가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분노를 넘어 무기력함을 느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할 때가 많았고 그것이 행동하지 않는 습관으로 굳어졌다. (학생 J, 1학년)

눈앞에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도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침묵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조별토의 내용 중 발췌)

아직 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갈 길은 멀다. 인권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할 것 같다. (익명의견)

‘다수가 침묵하는 현실’, ‘요원해 보이는 인권문제의 해결’ 등이 학생들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능력과 능률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학생들이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고,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타인에 삶에 무관심하고 내가 나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이를 수 있으며, 환경 탓과 상황 탓은 변명처럼 생각했다. 남의 삶에 무관심해도 괜찮으며 나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바쁘다고 생각했다. (학생 D, 2학년)

주변 사람들은 차별받는 이들에게 불쌍함을 느끼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때 분노를 느끼곤 했지만, 나는 그런 입장보다는 그저 외부에서 그 사건을 관찰하는 입장에 더 가까웠다. 그로 인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인권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한 태도를 반성하게 되고 점차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내가 접한 사회적 환경에서는 공감보다는 경쟁과 개인주의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지 못했다. (학생 G, 4학년)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주변의 일상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부터 사회적, 정치적 의제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인권침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고 있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본 후 그 일을 실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소정의 돈을 기부한 적이 있다. (학생 J, 1학년)

나는 그저 재미를 위해 악의적인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을 뿐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비하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그 이후로 대화할 때 이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나의 언행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소하지만 나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었다고 느낀 지점이기도 하고, 내가 불편한 감정 없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도 인권 감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H, 1학년)

‘사소하지만 실천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실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인권단체 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인권단체 후원, 학교나 단체의 인권포럼 참석, 시위 참여, SNS를 통해 인권문제를 알리고 여론 형성하기, 캠페인 동참, 입법 청원에 서명하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년 4월 16일에 노란 리본을 달거나 추모 행사에 참여한다. 세월호 관련하여 친구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이다. (학생 L, 1학년)

이태원 참사 당시 SNS를 보고 있었는데 애도하는 글도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냐며 여성 피해자를 비난했다. 다 같은 피해자인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SNS를 통해 사귀 친구들과 만나서 토의도 하고 퀴어축제도 가보면서 오랜 시간 경직된 생각을 더 넓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깨달았다. (학생 M, 1학년)

수업에서 학생들의 실천 경험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인권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 의지를 갖게 하는 자원이 된다.

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 똑똑한 사람들만 논하는 주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반 시민이 권리의 주체인 만큼 그 누구보다도 일반 시민이 가장 목소리를 내야 하는 문제이고, 가깝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며 조금 더 가깝게 여기게 된 것 같아 보람이 있었다. (익명의견)

다른 사람의 인생, 특히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영위해 가고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였다.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그곳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자 한다. (익명의견)

작은 참여라도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학생 F, 1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감을 경험한다. 연대감을 통해 학생들은 고립감이나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대는 해결의 힘을 제공하지만, 고립은 경쟁과 불안을 부추길 뿐이다. 학생들은 인권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자기 관계<sup>19)</sup>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하지만 타인의 인권 또한 내가 보장하고 결정짓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익명의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생각해 보았다. 인권을 알기 전에는 폭력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인지하고 나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상호소통하여 연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별토의 내용 중 발췌)

#### IV. 결론

본 연구는 인권 감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적용 및 실천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학 인권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을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측면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인지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인권 감수성의 주요한 요소로 이해한다

---

19) 악셀 호네프(Axel Honneth)는 내가 타자와 맺는 세 가지 관계, 즉 사랑, 권리, 연대라는 서로 다른 상호 인정 형식이 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의 세 가지 긍정적 실천적 자기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혈연, 종교, 관습 등에 뿌리를 두지 않는 민주적 연대에서 개인은 타자를 주시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하고 타인에게서 받은 좋은 평가를 통해 자부심을 획득하게 된다(이현재, 2019: 26, 46-47).

는 점에서,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의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은 인권 지식을 학습하거나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곧바로 실천에 연결되지는 않았다. 실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실천에 참여하였으나 변화되지 않는 현실로 인한 무기력감이 학생들의 실천의지나 행동을 제약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대학이 인권에 대한 태도와 실천방식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인권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감수성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이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자신이 놓인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할 때 인권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천 경험을 보다 분석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실천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인지,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 의지를 자각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실천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했던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을 돌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 교과목의 수업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 학생들이 인권교육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권기반<sup>20)</sup> 교육방법

20) ‘기반(Based)’이란 표현은 특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표현인 인권친화적(Friendly), 인권중심적(Centered), 인권지향

에 대한 교수자의 고민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인권은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침과도 같다(전형준, 2022: 326). 이러한 점에서 인권 가치의 지향과 실천은 삶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 대학의 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권 교과목 수업이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서 사유하고 실천하는 열린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25. 05. 13, 논문심사일: 2025. 06. 05, 게재확정일: 2025. 06. 16)

---

적(Oriented) 등과 비교할 때 ‘기반’의 의미는 선호나 취향 또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인권재단, 2015: 50).

##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별책1). 세종: 교육부.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구정우·남윤창·황태희. 2018. “인권 감수성 예측모형 구축: 데이터마닝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5(1): 53-110.
- 국가인권위원회. 2009. 『대학교 인권관련 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4. 『인권의식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숙. 202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4(3): 3719-3732.
- 김선필·염미경. 2013. “학생의 인권감수성 분석과 학교인권교육의 방향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8(2): 23-49.
- 김용신. 2025. “인권의 본질과 인권교육의 지향 탐구.” 『국제지역연구』 29(1): 209-224.
- 김위정·김종우·이가람. 2021.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경기도교육연구원보고서.
- 김자영. 2012. “청소년의 인권의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3(1): 5-40.
- 김화경. 2014. “교양교육에서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 『교양교육연구』 8(2): 333-356.
- 나달숙. 2015.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45-50.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노을이·안채리·박수정. 2018. 『인권, 교육에 푹』. 서울: 에듀플랜.
- 류미령. 2017. “인권교육을 통한 아동권리 증진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135-162.
- 마사 누스바움. 2011.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우석영 옮김. 서울: 궁리.
- 마이클 프리먼. 2005. 『인권 : 이론과 실천』. 김철효 옮김. 서울: 아르케.
- 문용린. 2002. 『인권 감수성 지표 개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민응기. 2024. “대학 교양교육의 보편적 가치 지향성과 교육관의 쟁점.” 『한

- 국문법교육학회&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67-272.
- \_\_\_\_\_. 2023. “인문학적 사유에 근거한 창의적 사회혁신역량 창출을 위한 대학 교양교육.” 『인문과학연구』 49: 87-115.
- 박형빈. 2021. “나바에츠(D. Narvaez)의 윤리 감수성(EthicalSensitivity)에 기초한 통일감수성 교육 방안”. 『한국통일교육연구』 18(1): 33-71.
- 변길희. 2023. “보육교사의 인권 감수성과 권리존중 보육실행과의 관계.” 『사회과학리뷰』 8(3): 183-194.
- 심태은·이송이. 2018. “대학생의 인권 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0): 352-360
- 유성상·박병진·김영중. 2015.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3-36.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보라. 2023. “대학 교육과정에서 인권 교과목 개발과 운영 방향.” 『대학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 이성훈. 2010.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2): 215-252.
- 이쌍철. 2019.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현재. 2016. “도시적 감정으로서의 여성 혐오와 도시적 젠더정의의 토대로서의 공감의 가능성 모색.” 『한국여성철학』 25: 35-64.
- \_\_\_\_\_. 2019. 『악셀 호네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전윤경. 2020. “인권교육법 입법의 교육적 의미와 과제-인권교육의 국제동향을 기반으로.”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9(1): 77-108.
- 전형준. 2022. “의사소통의 규칙과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 『인권법평론』 28: 309-340.
- 정진성. 2014.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재원·이은아. 2018. “대학생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 『교양교육연구』 12(5), 11-35.

- 조윤희. 2024.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메이커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효제. 2016. 『인권의 지평』. 서울: 후마니타스.
- 최 령·강지혜. 2024.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고찰.” 『보건료생명과학논문지』. 12(2), 345-352.
- 한국인권재단. 2015. 『인권기반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 서울: 한국인권재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023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허완중. 2023.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헌법재판연구』 10(2): 289-318.
- 홍석민. 2022.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의 개혁 필요성.” 『교양교육연구』 16(2): 65-79.
- 홍순혜·원미순·박미현·문정희. “청소년의 인권감수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미래청소년학회지』 11(3): 43-63.
- Hee-Jin Lee and Won-June Lee. 2004. “The Effect of Emotional Concern on the Intention to Act on Human Rights for Celebrities Victimized by Sexual Harassment: Focusing on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8(6): 63-77.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1, March 24).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HRC/RES/16/1).

<Abstract>

**Understanding and Applying Human Rights Sensitivity  
: Focusing on Case Studies in University Human Rights Courses**

Kim, Hyunjung\*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tudents' understanding, applica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s regarding human rights sensitivity. Through the review of the students' responses in human rights courses established as liberal arts courses in universities, The study reviewed the direction and task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universities to enhance human rights sensitivity. Students recognized that human rights sensitivity includes cognitive, emotional, and practical aspects. Although students had awareness and sympathy for human rights issues, they had difficulty putting them into practice. However, they were participating in solving human rights issues through various activities.

The direction and tasks that university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aim for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human rights sensitivity that integrates cognitive, emotional, and practical elements,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allow students to reflectively analyze their own experiences. Second, they should be made aware of and sustain their willingness to practic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course classes can become a 'space for solidarity' where students can 'think and practice together.' Third, The teaching process of human rights courses itself must be democratic. In order

---

\* Korea University, The Center for Human Rights & Gender Equity

for students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democratically, professors must reflect on and practice human rights-based education methods.

Keywords: human rights sensitivity, human rights education, university human rights education, college liberal arts class